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2743-2004-000378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-30외 2필지 제4층 제4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-30, 686-18, 686-28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길 26	철근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7층 공동주택(아파트) 지2층 579.11㎡ 지1층 669.16㎡ 1층 465.60㎡ 2층 465.60㎡ 3층 448.63㎡ 4층 442.98㎡ 5층 442.75㎡ 6층 402.69㎡ 7층 376.09㎡ 옥탑 65.90㎡(연면적제외)	도로명주소 2014년3월31일 등기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-30 2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-18 3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-28	대 대 대	1176.2㎡ 76㎡ 45.6㎡	2004년3월30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4년3월30일	제4층 제401호	철근콘크리트조 156.73㎡	도면편철장 제1책 94장

(대지권의 표시)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, 2, 3 소유권대지권	1297.81분의 73.99	2004년3월29일 대지권 2004년3월30일
2			별도등기 있음 1토지(을구 2번, 4번 근저당권설정 등기), 2토지(을구 2번, 4번 근저당권설정 등기), 3토지(을구 2번, 4번 근저당권설정 등기) 2004년3월30일
3			2번 별도등기 말소 2004년4월19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4	소유권이전	2006년9월8일 제36943호	2006년8월11일 증여	소유자 오현경 690828-*****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길 26,602호(한남동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7	근저당권설정	2018년1월30일 제3247호	2018년1월29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54,000,000원 채무자 오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길 26,602호(한남동) 근저당권자 지오메트리글로벌코리아유한회사 110114-0194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7(삼성동, 제이에스타워)

-- 이 하 여 백 --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-30외 2필지 제4층 제401호

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1년07월04일 18시27분46초

3/3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2743-2004-000378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-30외 2필지 제4층 제4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오현경 (소유자)	690828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길 26,602호(한남동)	4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7	근저당권설정	2018년1월30일 제3247호	채권최고액 금54,000,000원 근저당권자 지오메트리글로벌코리아유한회사	오현경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